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5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09일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권영희, 김기대,
김기덕, 김상진, 김수규,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송도호,
송아량,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성배,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전석기,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의원(33명)

1.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 및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2021. 7. 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상 명시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은 삭제가 되었는바, 이에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따르도록 함(안 제2조).
-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제5조제4항, 제10조 등).
- 다.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2조의2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자치구청장”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을 “법 제26조”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 제3항”을 “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한다.

4의2.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의2.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을 “법 제7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경우를”로 한다.

제24조 단서 중 “법 제17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를 “법 제27조 및 법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32조의9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반환명령”을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로, “지방보조금에”를 “지방보조금의 교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제5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각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각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제3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

제4조(보조대상) -----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6조제2항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

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 ⑥ (생략)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신설>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8. (생략)

--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
법 제26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제60조-----

7.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②·③ (생 략)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등) ① ----- 제11조에 따른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 법 제7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경우를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교부방법) -----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

-----.

제32조(성과평가) ① ----- 법 제27조 및 법 시행령 제16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
--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② -----

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

-----, ----- 법 제21조제3항-----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지방재정법」 제60조-----

-----.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

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반환명령 또는 삭
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
재부가금의 부과--- 지방보조
금의 교부예 -----
-----.

②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 제1항 및 제2항-----